#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30

발의연월일: 2022. 1. 14.

발 의 자:서일준·홍문표·김용판

박 진 • 윤한홍 • 김승수

조명희 · 추경호 · 양금희

최형두 · 이 용 · 하영제

이주환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개선 등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3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있다.
- ③ 시·도지사(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가 하는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3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으로, "개선권고"를 "개선 또는 개선권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개선권고"를 "개선 또는 개선권고"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보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아 혅 행 개 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생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 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 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_ 제40조 용한다. 에 따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 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 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인구 100만 이상 <신 설> 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가 하 는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 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 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 항을 준용한다.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①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 이상 대도시의 장은 ----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 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 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 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 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 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 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 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u>시·도지사</u>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u>개선권고</u>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 ⑥ (생략)

② <u>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u>
이상 대도시의 장은
<u>개선 또는</u>
개선권고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u>
이상 대도시의 장개선 또는
개선권고
⑥ (현행과 같음)